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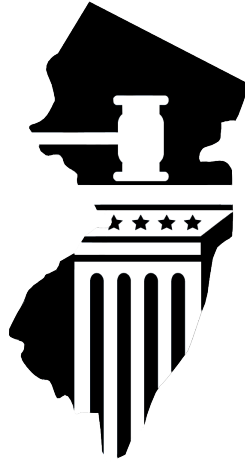
뉴저지주 법원
New Jersey Judiciary

특별민사
법원 안내

Special Civil - A Guide to the Court – Korean

New Jersey Courts

www.njcourts.gov



Independence • Integrity
Fairness • Quality Service

뉴저지주 상급법원

법률부

특별민사과

Superior Court of New Jersey

Law Division

Special Civil Part

특별민사(Special Civil) 법원은 귀하가 개인 또는 사업체 (피고)에 대해 최대 \$15,000의 채무 상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한적인 재판권을 행사하는 법원입니다. 청구액이 \$3,000 이하인 경우[임대인의 보증금인 경우 \$5,000], 채권자는 소액청구(Small Claims)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청구소송 관련 소책자를 참조하십시오. 이 소책자는 소장을 제출하는 방법,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준비하는 방법, 항소를 제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특별민사소송과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소책자는 법적 자문을 제공하거나 이를 대신할 수 없으며, 법원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모든 답변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귀하의 권리에 관한 법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연락하십시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으면, 카운티 변호사 협회(County Bar Association)의 변호사 소개 서비스(Lawyers' Referral Service)로 연락하십시오.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카운티의 법률지원 서비스 프로그램(Legal Services Program)에 연락해서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특별민사법원

특별민사법원은 상급법원 특별민사과(Special Civil Part)에 속한 세 법원 중 하나입니다. 다른 두 과는 건물주/임대인(Landlord/Tenant) 및 소액청구(Small Claims) 법원입니다. (이 두 법원과 관련된 별도의 소책자가 있습니다.) 특별민사법원은 \$15,000 이하의 청구 소송만을 담당합니다. 청구액이 \$15,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급법원(Superior Court)의 법률부(Law Division) 민사과(Civil Part)를 통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손해액이 \$15,0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특별민사소송을 제기하기를 원하면 \$15,000와 실제 손실액의 차액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 차액은 차후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 청구제기 사례

다음은 특별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일반적인 청구 사례입니다.

- 개인 또는 사업체가 서면 또는 구두계약을 위반.
- 선납 계약금의 반환.
- 자동차 사고로 인한 재산피해.
- 재산의 훼손 또는 손실.
- 하자가 있는 상품 또는 조잡한 제작 상태에 대한 소비자 불만.
- 수행한 작업에 대한 보수의 지급.
- 부도수표에 대한 청구.
-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 불법 또는 부당한 퇴거, 점유 영장 등. (특별한 사건에는 모든 서기 사무실에서 구할 수 있는 특별한 서식이 요구됨)

소장제출 장소

소장은 반드시 적어도 한 명의 피고가 거주하거나 피고의 사업체가 소재한 카운티의 특별민사과 사무실의(Office of the Special Civil Part)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업체는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카운티 또는 사업체를 등록한 카운티에 위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피고가 한 명 이상인 경우에는 피고들 중 누구라도 거주하거나 소재한 카운티에 소장을 제출 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들 중 아무도 뉴저지 주에 거주 또는 소재하지 않는 경우, 소장은 소송의 원인이 발생했거나 시작된 카운티에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가 임대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인 경우, 귀하는 임대물이 위치한 카운티에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제기 자격

특별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18 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18 세 미만인 경우에는, 반드시 부모 또는 보호자가 미성년자 대신 그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고소나 맞고소 청구금액이 \$3,000 를 초과하는 경우에 원고 또는 피고가 법인이거나, 동업관계, 유한책임회사 일 때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법인의 임원, 관재인, 간부, 대리인이나 직원은 \$3,000 이하의 금액을 청구하거나 청구에 대해 항변할 수 있습니다.

소송제기

[특별민사소송 및 소환장 양식을 포함한 자신번호 (*Pro Se*) 서식 안내서는 뉴저지 주 내 모든 특별민사과 사무실에서 구할 수 있고 njcourts.gov 사이트에도 나와 있습니다.]

소송은 우편으로 하거나 본인이 직접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시, 원고는 반드시:

-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명기해야 합니다.
- 소장이 정확하게 송달되도록 소송의 피고(들)로 기명된 사람(들)의 성명(들)과 주소(들)를 명기해야 합니다. 피고가 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 동업관계, 법인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 귀하가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 피고에게 청구를 하는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 이 소송과는 별도로 본인과 다른 당사자(들) 간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있는지 여부를 기재해야 하며, 만약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있는 경우, 관할 법원의 이름을 기재해야 합니다.
- 작성한 양식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해야 합니다.
- 소장을 제출 할 때 정확한 소송 접수비와 송달 수수료를 특별민사과 사무실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요구된 것보다 적은 금액을 지불하면 신청서가 반송될 것입니다.
- 어떤 당사자라도 소셜 시큐리티 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차량 번호판 번호, 보험증서 번호, 사용중인 금융계좌 번호 또는 사용중인 신용카드 번호를 법원에 제공하지 마십시오. 이런 정보는 법, 법원 명령, 규정 또는 행정지시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공하십시오. 귀하의 서류 원본에서는 이런 정보를 안보이게 카바하지 마십시오. 사용중인 금융계좌 정보는 그것이 소송의 주제이고 다른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마지막 4 숫자를 제시하십시오.

소송을 제기한 후,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35 일 이내에 피고가 특별 민사과 사무실에 서면답변서를 적절한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지 않는 한, 재판 일시는 확정되지 않습니다. 피고가 35 일 이내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 일시가 확정됩니다. 법원은 모든 당사자들에게 재판 일시를 통지합니다.

만약 피고가 35 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의무 불이행 판결을 내립니다. 원고는 의무 불이행 판결이 내려진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반드시 “의무 불이행 판결문”을 신청하거나 의무 불이행 판결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가 정해진 시일 이내에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원에 출두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의무 불이행 판결을 통해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원고는 청구액을 입증하는 진술서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하고, 피고가 개인인 경우에는 현재 미국 군인으로서 복무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법원에 증명해야 합니다. 군복무 증명은 피고가 사업체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고는 서류만으로 증명할 수 없는 청구액을 법정에서 심리를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의무 불이행판결 신청 방법에 대한 자신변호(*pro se*) 소송 안내서도 뉴저지 주의 모든 특별 민사과의 사무실에서 구할 수 있으며 njcourts.gov 사이트에도 나와 있습니다.]

만약 소송이 자동차 사고로 인한 금전적 피해에 대한 것이고, 피고가 \$500 이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는 경우, 피고는 반드시 이를 60 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60 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판결을 받은 금액이 지급될 때까지 특별민사과 사무실을 통해 뉴저지주 차량국(New Jersey Motor Vehicle Commission)에 피고의 운전 및 등록 권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제기 접수료

특별민사소송 접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액이 \$3,000 이하인 경우, 소송 당 \$50.
- 청구액이 \$3,000 를 초과하는 경우, 소송 당 \$75.
- 각 추가 피고 당 \$5.
- 현재 등기 및 일반우편 송달 수수료는 각 피고 당 \$7 입니다. 그러나 이 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장을 법원 직원이 직접 송달하는 경우, 수수료 \$3 에 법원 직원의 마일 당 운임을 가산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귀하가 법원 직원이 직접 송달하기를 원하는 피고가 한 명 추가 될 때마다, 수수료 \$5 에 법원 직원의 마일 당 운임이 가산됩니다.) 특별 민사과 직원이 귀하에게 마일 당 운임을 통지할 것입니다. **Treasurer, State of New Jersey** 를 수취인으로 하는 수표나 머니오더로 지불하십시오.
- 6 명의 배심원들로 구성된 배심재판을 요청할 경우에는 \$100 의 추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귀하가 접수료를 지불할 여유가 없으면, 빈곤자로 인정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판사가 접수료를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소장에 대한 답변서 제출

만약 귀하가 소송 사건에서 피고인으로 지명되었으면 반드시 소환장에 명시된 시일 이내(뉴저지 주에 거주 또는 소재한 경우 35 일, 타주에 거주 또는 소재한 경우 35 일)에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소송이 제기된 카운티의 특별민사과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답변서사본을 인편으로 배달하거나 원고에게 보통 우편이나 배달 증명우편으로 송달하거나 또는 원고의 변호사에게 보통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안내서가 첨부된 *자신변호 (Pro Se)* 서식 안내서는 뉴저지 주 특별민사과 사무실에서 구할 수 있으며 njcourts.gov 사이트에도 나와 있습니다.]

만약 피고가 원고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확신하면, 답변서에 맞고소(counterclaim)를 반드시 추가해야 합니다. 만약 소장에서 피고로 기명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확신하면 답변서에 반드시 그 피고에 대한 교차 청구(cross claim)도 추가해야 합니다. 귀하는 교차청구를 공동 피고인(들)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소장에 기명되지 않은 당사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확신하면 답변서에 반드시 제 3 자 소송(third party complaint)을 추가해야 합니다. 법원은 귀하가 사건에 추가한 새 당사자에게 송달하며 귀하는 위에 명시한대로 이 송달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 시 다음의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십시오:

- 소장에 표시된 소송사건 번호와 사건의 표제.
- 귀하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원고(들)의 정확한 성명(들), 주소(들).
- 원고의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들). 만약 답변서에 맞고소, 교차청구, 제 3 자 소송을 추가한 경우, 귀하가 청구하는 금액을 포함하십시오.
- 귀하가 제 3 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환장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십시오.
- 어떤 당사자라도 소셜 시큐리티 번호, 운전 면허증 번호, 차량 번호판 번호, 보험증서 번호, 사용중인 금융계좌 또는 사용중인 신용카드 번호를 법원에 제공하지 마십시오. 이런 정보는 법, 법원 명령, 규정 또는 행정지시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공하십시오. 귀하의 원본에서는 이런 정보를 안보이게 카바하지 마십시오. 사용중인 재정계좌 정보는 그것이 소송의 주제이고 다른 방법으로는 확인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마지막 4 숫자를 제시하십시오.

또한 특별민사과 사무실에 답변서를 제출할 때 반드시 답변서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하십시오. 규정된 액수에 미달하는 수수료를 지불했을 경우 제출서류는 귀하에게 반송됩니다.

소환장에 명시된 시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무 불이행 판결이 납니다. 법원은 피고가 정해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무 불이행 판결을 통해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우편으로 재판 일시를 통지합니다.

답변서 제출 수수료

- 답변서 당 \$30.
- 청구금액이 \$3,000 이하인 맞고소, 교차 청구 또는 제 3 자 소송이 추가된 경우, 답변서 당 \$50.
- 청구금액이 \$3,000 를 초과하는 맞고소, 교차 청구 또는 제 3 자 소송이 추가된 경우, 답변서 당 \$75. (참고: 서기는 제 3 자 소송에 귀하가 새로 추가한 개인이나 사업체에 송달하는 추가 수수료도 부과합니다.)

귀하가 법원 서류제출 수수료를 지불할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 법원에 빈곤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판사가 소송제기 수수료를 면제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준비

서면 질문서

법원 규정에 따라서 당사자들 간에 정보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원고이거나 피고이거나 상관없이, 상대방에서 요구하는 “서면질문서”라고 불리는 질문들에 대해, 서면질문서를 받은 후 30 일 이내에 답을 해야 합니다. 원고는 답변서를 받은 날부터 오직 30 일 이내에만 당사자들 중 누구에게라도 질문사항을 보낼 수 있으며, 원고가 신체적 상해 또는 차량 과실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장/초기 변론서에서 답변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원고

원고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에서 사건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증인과 기록을 준비하십시오. 선서하에 작성되었다 해도, 서면으로 작성된 진술서는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재판에서는 증인(들)이 듣거나 본 것만을 실질적인 증언으로 간주합니다. 질문을 사전에 준비하십시오.

사건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거래에 대한 기록을 법원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그러한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지불필 수표, 머니 오더, 영수증.
- 청구서, 계약서, 견적서, 임대 계약서.
- 서신.
- 사진.
- 청구액을 입증하기 위한 기타 서류.

재판이 열리기 전에 피고와 합의를 본 경우, 특별민사과 사무실로 즉시 연락을 하십시오.

피고

귀하가 피고이면, 귀하도 원고가 한 것과 똑같이 귀하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재판 당일에 필요한 모든 증인과 서류를 동반 및 지참하고 법원에 출두해야 합니다.

반드시 재판 통지서에 명시된 날짜와 시간에 맞추어 법원에 출두해야 합니다. 출두하지 않으면 의무 불이행 판결이 내려지고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 금액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 날짜 이전에 원고와 사건에 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경우, 법원에 즉시 연락하여 해당 사건이 합의되었음을 확인하십시오.

재판 당일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통지가 없는 한, 피고와 원고는 반드시 재판 통지서에 명시된 날짜와 시간에 법원에 출두해야 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증인과 증거물을 동반 및 지참해야 합니다.

재판 당일, 법원은 사건을 전문 중재인에 의한 중재 또는 중립적인 제 3 자와의 합의 회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중재자들은 원고와 피고가 만족스러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중재인 또는 중립적인 제 3 자는 판사가 아닙니다. 만약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판사가 그 사건을 같은 날에 재판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귀하가 소송에서 승소하고 판결금액을 징수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금전 판결의 추심](#)”라는 소책자에 실린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이 소책자는 뉴저지 주의 모든 특별민사과 사무실과 njcourts.gov 사이트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항소권

원고 또는 피고로서, 귀하가 법원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건을 판결일로부터 45 일 이내에 상급법원 항소부(Appellate Division)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반드시 45 일 이내에 항소통지서(Notice of Appeal), 재판기록 요청서 (Request for Transcript)사본, 사건진술서(Case Information Statement)를 아래 주소로 제출해야 합니다: Clerk of the Appellate Division, Richard J. Hughes Justice Complex, PO Box 006, Trenton, NJ 08625. 또한 그 사본을 다음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 법원에 출두한 모든 당사자들.
- 항소부로 사건을 이체하는 특별민사과 사무실.
- 사건을 판결한 판사.

귀하는 반드시 항소 통지(Notice of Appeal)일시로부터 30 일 이내에 항소부 서기에게 항소 통지서와 접수료 \$250 를 납부하고 \$300 를 공탁해야 합니다. 이 공탁금은 항소에서 패소하는 경우 합의금 지급 또는 법원 관련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항소에서 승소하는 경우, 공탁금은 환불됩니다.

또한 재판기록(재판에서 진행된 사항을 기록한 문서의 사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 재판기록은 그 사건의 재판이 열린 카운티의 특별민사과 사무실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상 재판기록비(재판기록을 작성하는 법정 속기사, 서기 또는 대리인이 산정) 또는 재판 1 일당 \$300 를 서기에게 반드시 공탁해야 합니다. 또한 항소부 서기 사무소에 재판기록 사본 3 부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609-815-2950 로 항소부 서기에게 전화하거나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소책자는
뉴저지 주 법원
민사소송부가 제작했습니다.

This brochure is published by the
New Jersey Judiciary
Civil Practice Division

스튜어트 래브너
수석판사
Stuart Rabner
Chief Justice

글렌 A. 그랜트
법원행정처장 대행
Glenn A. Grant, J.A.D.
Acting Administrative Director of the Courts

제니퍼 M. 페레스
1 심법원 실장
Jennifer M. Perez
Director, Office of Trial Court Services

타이론다 E. 피닉스
민사소송 부실장
Taironda E. Phoenix
Assistant Director, Civil Practice

로버트 D. 피트
특별민사과 서비스 담당관
Lloyd Garner
Chief, Special Civil Part Services